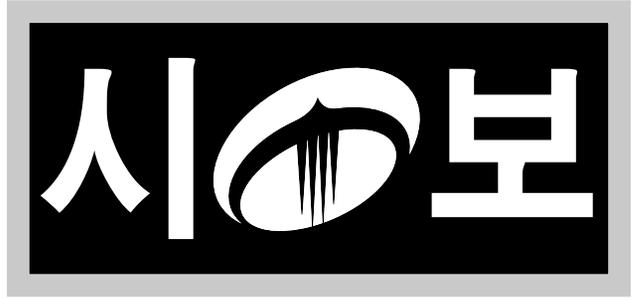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30호 2009. 5. 26(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2009-664호) 6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1

회								
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등의 적정한 조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등 시범설치 지역의 조도는 낮은 반면 일부 지역은 너무 밝아 전력이 낭비되는 곳도 있음 - 가로등 조도규정을 준수하여 밝기가 일정하도록 읍면동 전지역에 조도 확인을 실시하기 바람, 	전 부 서 (건 설 과) (남·북구청) (읍 면 동)
'09-0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조속히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산정비, 형산강 전투기념비 뿐만 아니라 현장 또는 회의시 지시한 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 각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이행을 철저히 하기바람. 	전략경영팀
'09-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 지역순찰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간판, 쓰레기, 가로등, 도로 지장물 등 즉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여러 곳에 있음 - 읍면동장은 관내 상황을 철저히 순찰하여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체크하고 -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즉시 조치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남·북구청) (읍·면·동)
'09-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자매도시 교류운영 프로그램 개발운영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간 결연만 해놓고 교류활동이 미미함 -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교류활성화를 기하기 바람. 	경제통상과

입법예고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5월 21일

포항시 공고 제2009 - 664호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 확충은 한계에 이룸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자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유도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 명시

나. 단위부담금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단위부담금 명시

다. 교통유발계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대상 시설물 명시

라. 부담금의 경감 및 교통량감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13조)

- 부담금경감 대상시설물 및 경감비율, 교통량감축 기간 및 이행 계획서 제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탄력성, 적용 예외 등 명시

3. 제정 조례(안) : 아래 내역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790-310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 전 화 : 054)270-3615
- 팩 스 : 054)270-362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승용차요일제”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날에만, 홀수이면

홀수날에만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통근버스운영” 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바. “출근시차제” 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간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주차장 유료화” 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포항시 주차장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자. “자전거이용” 이란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차.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란 주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카. “업무택시제” 란 기업체의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

장, 정수처리장 등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마트 : 5.34
- 2. 집회장 중 예식장 : 3.59
- 3.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 2.10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 비율은 각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 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 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월 이상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제출하고 제8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영을 아니한 경우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발급받은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 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제9조제1항의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교통량감축기간이 종료한 연도의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9조 규정에 의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 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계획서의 제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서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2009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7조제1항 관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요일제 (5부제 포함)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 운행제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차량의 운행제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단, 10·5부제, 요일제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주차요금 징수)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단,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 무료주차권을 인정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 기업체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이상(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출·퇴근 운영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자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	○종사자의 70%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시차 출근제	종사자	○종사자의 50%이상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단, 06:00 이전 또는 12:00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자전거 이용	종사자	○종사자의 5%이상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5%이상 참여시 100분의 5 - 10%이상 참여시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종사자	○종사자의 90%이상 참여하고 주 1회 이상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업무택시제 시행	종사자	○기업체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포항시내 출장의 50%이상을 업무택시로 이용하고, 관련계획 비치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대	종사자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율 (%)	세부사항	
	계				
	승용차부운행	10부제	10		시행방법 :
		요일제 (5부제 2회)	20		
		2부제	30		
	주차장유료화	10, 20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	
	통근버스운영	10, 20		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5		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시차출근제	5		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자전거 이용	5, 10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대중교통 이용의날	3		횟수 : 월 회, 참여율 : %		
업무택시제	10		종사자수 : 명, 참여율 : %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p>「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인(대표자) : (인)</p> <p>포항시장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대	대	종사자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당초신청 (%)	경감신청 (%)	이행기간	비고	
	계						
	승용차제한	10부제	10				
		요일제 (5부제포함)	20				
		2부제	30				
	주차장유료화	10, 20					
	통근버스운영	10, 2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5					
	시차출근제	5					
	자전거 이용	5,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업무택시제	10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월간)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p>「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p> <p>포항시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m ² (m ²)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사항 (%)	결정사항 (%)	비고	
	계					
	승용차제행	10부제	10			
		요일제 (5부제포함)	20			
		2부제	30			
	주차장유료화	10, 20				
	통근버스운영	10, 2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5				
	시차출근제	5				
	자전거 이용	5,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업무택시제	10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월간)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p>「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장 (인)</p>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09년 5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5. 22.

포항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위원장

정 수

채수일자	2009년 5월 4일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	-------------	------	------------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태지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 무기물질	4. 납(Pb)	0.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 이하	0.2	불검출	불검출	0.2	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비소(As)	0.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6가크롬(Cr ⁶⁺)	0.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 이하	0.3	0.4	0.7	0.4	불검출	0.1	0.3	1.2
	13. 카드뮴(Cd)	0.0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 이하	0.042	0.022	0.026	0.047	0.047	불검출	0.030	0.025
	15. 페놀(Phenol)	0.0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 유기물질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2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돗물 잔류염소	31.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 이하	0.61	0.32	0.78	0.48	0.30	0.29	0.33	0.54
	32.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 이하	0.0745	0.0366	0.0737	0.0734	0.0406	0.0287	0.0504	0.0384
	33.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 이하	0.03203	0.02908	0.06239	0.02855	0.01038	0.02081	0.01777	0.02490
	34.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 이하	0.02807	0.00752	0.01134	0.02806	0.01607	0.00793	0.02038	0.01088
	35.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 이하	0.0144	불검출	불검출	0.0168	0.0142	불검출	0.0122	0.0026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태지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심미적영향물질	36.경도(Hardness)	300mg/ℓ 이하	114.8	74.9	90.2	119.5	129.6	37.3	83.2	93.2
	37.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 이하	3.20	2.40	3.10	3.75	2.74	1.23	2.37	1.54
	38.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9.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동(Cu)	1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1.색도(Color)	5도이하	1.0	1.0	1.0	1.0	1.0	1.0	1.0	1.0
	42.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수소이온농도(pH)	5.8-8.5	7.3	7.4	7.5	7.4	7.3	7.1	7.2	7.0
	44.아연(Zn)	3mg/ℓ 이하	0.006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64	0.0022	0.0025	0.0509
	45.염소이온(Cl ⁻)	250mg/ℓ 이하	53	11	13	62	59	13	46	16
	46.중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ℓ 이하	250.0	92.0	118.0	274.0	276.0	74.0	192.0	150.0
	47.철(Fe)	0.3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52	불검출
	48.망간(Mn)	0.3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39	불검출	불검출	0.0161	불검출
	49.탁도(Turbidity)	0.5mg/ℓ 이하	0.158	0.253	0.088	0.277	0.118	0.109	0.294	0.103
	50.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 이하	56	16	20	62	72	13	44	42
51.알루미늄(Al)	0.2mg/ℓ 이하	0.028	0.068	0.093	0.047	0.029	불검출	0.029	0.034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관 리 책 임 자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								

노후지역 수도꼭지

채수일자		2009년 5월 4일								
검사항목	정수장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기준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2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질류염소	4.0mg/ℓ 이하	0.62	0.23	0.77	0.46	0.25	0.22	0.26	0.38	
6.동	1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 이하	0.004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00	불검출	불검출	0.0520	
8.염소이온	250mg/ℓ 이하	56	12	13	64	61	13	55	17	
9.철	0.3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ℓ 이하	불검출	0.0053	불검출	0.0457	불검출	불검출	0.0137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